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08

발의년월일 : '99. 11. 1.
발 의 자 : 박찬선 의원
외 5 인

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,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2000회계년도 세입·세출 예산(안) 및 '98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(안)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主要骨子

가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(위원선임방법 및 위원의 수등)
나. 회부 안건
다. 위원회의 활동 기간
라.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

3. 關聯法規

ㅇ지방자치법 제50조 (위원회의 설치)
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(위원선임)
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(특별위원회)
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64조(예산안의 심의 등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1. 주 문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2000회계년도 세입·세출예산(안) 및 '98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(안)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"예산결산특별위원회"를 구성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의한다.

2. 특별위원회명 : *예산결산특별위원회*

3. 위원의 수 : 11 인

4. 위원의 선임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

5. 회부 안건

- 서울특별시서초구 2000회계년도 세입·세출예산(안)
- 서울특별시서초구 '98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(안)

6. 활동 기간

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

7.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

-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 실시
- 관련된 규정, 자료검토 및 확인 등
- 활동결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

관 련 법 규

<지방자치법>

제50조(위원회의 설치)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<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>

제6조(위원의 선임)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제9조(특별위원회)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,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.
③(생 략)